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9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박선원 · 김승원 · 장종태
이재관 · 권향엽 · 이훈기
김상욱 · 주철현 · 전현희
이광희 · 민병덕 · 이수진
박용갑 · 백승아 · 손명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에 항거하였고, 이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조직된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음.

이에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민주권의 날) ①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에 평화적 방법으로 항거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주권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국민주권의 날 기념행사
2.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 헌정질서 수호 관련 학술·교육행사
3.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 헌정질서 수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등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국민주권의 날) ①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에 평화적 방법으로 항거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한다.</u> <u>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주권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u> <u>1. 국민주권의 날 기념행사</u> <u>2.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 헌정질서 수호 관련 학술·교육행사</u> <u>3.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 헌정질서 수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등에 대한 포상</u> <u>4. 그 밖에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